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33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난임 및 유산·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유산·사산극복 지원 내용을 신설 (안 제1조, 제3조 ~ 제7조).

다. 목적, 정의 수정(안 제1조, 제2조).

라. 지원사업 수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11. 15. ~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인 사람”을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경감을 도모하고,”를 “경감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을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난임부부의 난임”을 “난임, 유산·사산부부의”로, “난임극복”을 “극복”으로 한다.

제4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제5조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사산 부부”로 한다.

제6조 중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정책”으로, “난임 원”을 “난임, 유산·사산 원”으로, “난임극복 지원에”를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1)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2) 현행 대비 일부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제5조에 따라 <u>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 <u>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경감과 -----.</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p>

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을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난임, 유산·사산극복 -----

-----.

② ----- 난임, 유산·사산부부의 -----
극복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
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
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
다.

제7조(지원사업) ① (생략)
<신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사산극복 -----

-----.

제5조(지원대상) -----

--- 난임, 유산·사산 부부-----

-----.

제6조(실태조사 등)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정책-----
---- 난임, 유산·사산 원-----

---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에 -----
--.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② (생략)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입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 4. (생략)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지원 중단) ----- 난입, 유산·사산부부-----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02호, 2023. 10.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제5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402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